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10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0310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4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4
2. 제정안의 내용	12
3. 주요 항목별 검토	16
가. 제1장 총칙	16
나.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24
다.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44
라.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51
마. 제5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단체	69
바. 제6장 보칙	71
사. 제7장 벌칙	77
아. 제8장 부칙	81
※ 참고자료	
참고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행 법령	8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1.
3. 회 부 일 : 2025. 5.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3조 등).

아.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5조).

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발형 전동휠, 양발형 전동휠인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등장하고 있음.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음¹⁾.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34만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개인형 이동수단 중 전동킥보드는 2019년 이후 판매량 감소추세²⁾를 보이고 있으며,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은 2024년말 기준 7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대수는 2023년 약 26만 대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22만대 수준을 보였음.

1) 김하영·황성걸, “개인형 전기 이동수단 ‘EPM(Electronic Personal Mobility)’의 시장분석과 향후 방향 제시”, 「조형미디어학」 Vol.18 No.2, 2015. p.96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요건 등 제재가 강화된 이후 판매 대수 및 제조업체는 감소추세

< 전동킥보드 판매 현황>

(단위: 대)

구 분	연 도								합 계
PM 판매대수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47,308
	58,114	83,815	89,481	85,142	25,343	5,066	297	50	

주 : PM(Personal Mobility)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현황>

(단위: 대)

구 분	연 도					
PM 운영대수 (공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970	99,350	161,850	222,000	259,177	219,664

주 : PM(Personal Mobility)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였는데,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2,232건으로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하긴 했으나 2018년 225건 대비 약 9.9배로 증가하였으며, 총 사상자수(사망자+부상자) 또한 2024년 2,509명으로 2018년 대비 약 10.3배로 증가하였음.

< 최근 6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 >

(단위 : 건,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고건수	225	447	897	1,735	2,386	2,389	2,232
사상자수 (사망+부상)	242	481	995	1,920	2,710	2,646	2,509
사망자수	4	8	10	19	26	24	23
부상자수	238	473	985	1,901	2,684	2,622	2,486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법」이 있음.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³⁾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약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제⁴⁾와 도로에서의 이용방법·주정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 개인형 이동장치⁵⁾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⁶⁾하고 있음.

3)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함.

4)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와 유사한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시행 전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운행속도에 비해 안전이 매우 취약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한 바 있음. (2021. 5. 13.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전동보드)의 안전확인 및 신고에 대해 규정⁷⁾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에 출입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함.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전동보드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실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되,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대여가 금지되어 있음.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 (생략)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③ (생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1.~4. (생략)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생략)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중 하나로 “개인형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규정⁹⁾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관리’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5년 7월말 기준 총 184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와 관련 산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현행 법령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8. (생략)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6.(생략)

7. 보행·자전거·개인형 교통수단·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현행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이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장소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어디에서나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업체의 등록제로의 전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제재규정 신설 등 대여사업 관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등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율 미비나 중복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지역마다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관리,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상이한 기준을 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표준이 될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¹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주차허용구역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방식)으로 규정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규제방식에 대한 업계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한편, 해외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도로교통 관련 일반법 또는 별도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한속도를 규정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¹¹⁾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운행 목적으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대여사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10)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997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323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219호)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함.

11) 싱가포르는 2019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의 보도 주행을 전면 금지하였음.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해외사례 >

구분	일본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별도 법령	없음 (도로교통법 적용)	「Active Mobility Act」	전기적 이동수단의 교통참여에 관한 규칙(eKFV)	없음 (도로교통법 적용)	「Guidance: Powered Transporters」
제한속도	30km/h	보도에서는 10km/h, 도로에서는 25km/h (전동킥보드는 보도 통행금지)	20km/h	25km/h	25km/h
보도통행 가능여부	불가	제한적 가능	불가	불가	불가
운전면허 / 제한연령	필요 / 16세 이상	불요 / 16세 이상	불요 / 14세 이상	불요 / 14세 이상	필요/ 18세 이상
헬멧 착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없음	재량
보험가입	의무	규정 없음	의무	공유업체에서 보험 제공	공유업체에서 보험 제공
대여사업 등록제 시행여부	부	여	부	부	시범사업 도입
이동장치 등록 의무	의무	의무	없음	없음	없음
기타 규제	-	번호판 부착	-	-	-

자료 : 국토교통부

2. 제정안의 내용

정준호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대별되고, 구체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단체 등 총 7개의 장(章)과 38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제22대국회에 이미 발의된 홍기원의원안(2201010), 박성민의원안(2201222)과 조문체계를 비교해 보면, 제정안은 홍기원의원안과 유사한 조문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제5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단체 부분이 추가되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문체계 >

정준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2201010)		박성민의원안(220122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제5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제5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제5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제6조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제6조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제6조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제7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	제7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제7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
제8조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국가 미지원)	제8조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국가 미지원)	제8조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국가 지원)
제9조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9조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9조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10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제10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제10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제11조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제11조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제11조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제12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제12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제12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제13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제13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제13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제14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국가 미지원)	제14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국가 미지원)	제14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국가 지원)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15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제15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제15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제16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제17조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제17조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정준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2201010)		박성민의원안(2201222)	
제18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18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18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19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9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9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20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제20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제20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제21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제21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제21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제22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제22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제22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제23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23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23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24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5조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제25조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제25조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26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27조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설 설치	제27조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설 설치	제27조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설 설치
제5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단체					
제28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9조	정관				
제30조	사업				
제6장 보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		-		제28조	국고보조 등
제31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제28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제29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제29조	자료제출 요구	제30조	자료제출 요구
제33조	등록취소 등	제30조	등록취소 등	제31조	등록취소 등
제34조	청문	제31조	청문	제32조	청문
제35조	과징금	제32조	과징금	제33조	과징금
제7장 벌칙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35조	과태료	제36조	과태료

정준호의원안		홍기원의원안(2201010)		박성민의원안(2201222)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3. 주요 항목별 검토

가. 제1장 총칙

1) 목적(안 제1조)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법의 목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등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의 제정 목적이 법 제명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그 의미가 일치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히, 개인용 이동수단의 이용자만이 아닌 보행자와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증진에도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정안 제2조제1호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정안과 달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를 사용¹²⁾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

1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들¹³⁾을 두고 있음.

제정안의 “개인형 이동수단”과 「도로교통법」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¹⁴⁾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를 포함한다는 점은 동일함.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33. (생략)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그러나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차정원을 1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승차정원이 2명으로 차이가 있어 해당 자전거는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사진】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세그웨이)	전동기 동력만으로 운행가능한 자전거

제21대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중 ①전동킥보드와 ②전동이륜평행차만을 위원회 대안에서 규율하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¹⁵⁾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음.

제정안은 제21대국회의 위원회 대안을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임.

15)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규율하고 있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할 예정임.

< 개인형 이동수단(장치) 법률별 규율 대상(안)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19.원동기 장치자전거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①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②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③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그 밖의 유사제품 외륜보드 이륜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THORTEL(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전동기 동시동력 PAS(파스) 방식)		
현행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 협의 * 외견, 이용자 인식, 속도 및 중량 등 유사점이 많아 같은 법에서 규율	

한편, 제정안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법
용어 차이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등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는 제정안의 제명과 그 의미가 일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등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 이바지’라는 제1조에 규정된 제정안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제4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을 통해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등과의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제정안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정비의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3. 수립된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및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

제정안
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에 따르면,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수행,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 수행 등이 모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유사한 입법례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16)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와 시장·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

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계획 수립 관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¹⁾와 시장·군수·구청장 모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안 제6조)

제정안
제6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제정안 제6조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도시·군계획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계획들의 시행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¹⁷⁾에서는 자전거의 이용 및 이용시설 확충계획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계획의 목록을 도시·군계획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안 제7조)

제정안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전거 등의 주차가 허용된 곳은 제외한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3.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곳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금지구역 5. 점자블록 등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금지구역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정안 제7조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등을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주차 금지 규정 위반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주차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차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 제정안에 따른 주차금지구역 >

제정안에 따른 주차금지구역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전거 등의 주차가 허용된 곳은 제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곳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금지구역
- 점자블록 등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제정안은 현행 차마의 주·정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인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제정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¹⁸⁾¹⁹⁾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
·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의²⁰⁾는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

18)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
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
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
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19)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
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0)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
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 ②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

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등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들에 따라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외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원칙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없음.

결국 제정안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제정안의 취지와 달리 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임.

다음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구역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한편,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발의된 3건의 제정안들의 주차구역 관련 규정을 비교해보면, 홍기원의원안(2201010)은 경찰청이 주장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금치구역에 예외적으로

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지자체가 조례를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성민의 원안(2201222)의 경우 지자체가 주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정안은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주차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차를 허용하는 취지로 보임.²¹⁾

<개정안별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관련 규제 비교 >

구분	홍기원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정준호의원안	현행 도로교통법
차도	- 주·정차 허용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경우 가능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u>조례로 주차 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u>	- 주·정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경우 가능	- 주·정차 허용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경우 가능
보도	- 주·정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경우, <u>지자체가 조례로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한 곳 주·정차 가능</u>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u>조례로 주차 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u>	- 주·정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경우 주·정차 가능	- 주·정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경우 주·정차 가능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공원·광장·단지 내 도로 등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	지자체가 주차금지구역 지정 가능	「도로교통법」 규정 대상 아님

21) 다만, 제정안은 「도로교통법」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보도 등에서도 주정차가 금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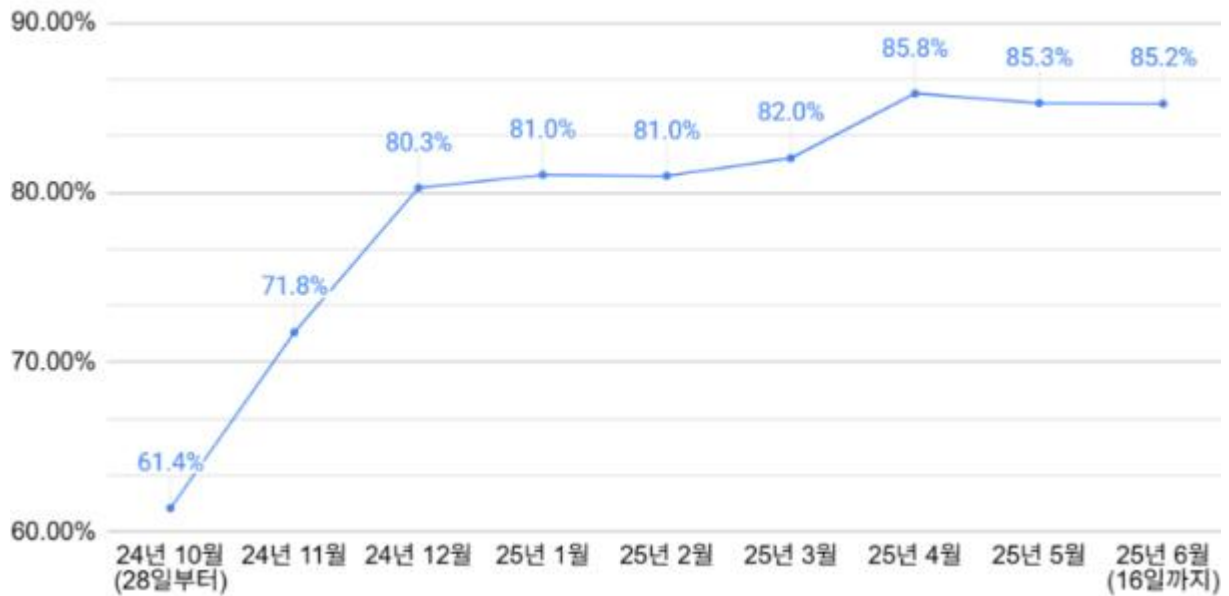
한편, 대구광역시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공유형PM 운영사 앱과 GPS시스템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주차시설 없이 앱상으로 가상주차구역을 설정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방식 마련 시 참고할 수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공유형PM 운영사별 주차구역 요청을 검토하고, 대구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가상주차구역을 설정하고, 가상주차구역 외 지역(주차금지구역) 주차시 앱에서 주차금지 구역임을 안내하고 만약 이용자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강제반납²²⁾시 이용자에게 이용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10월 시행 이후 평균 주차 준수율은 80.6%를 유지하고 있어 가상주차구역 제도의 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2) 주차금지 구역임에도 강제로 이동수단을 주차하는 경우를 말함.

< '24.10월~'25.6월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 월별 준수율 >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로, 2020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여 ‘전동 킥보드 웨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그 결과 토론자들은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해커톤 합의사항, 4차산업위, '20.10.) >

주·정차 가이드라인

-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 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②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③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④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⑤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⑥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⑦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⑧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⑨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⑩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⑪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⑫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



결론적으로, 제정안의 주차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과의 정합성, 최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의 효과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관계 부처 의견

① 국토교통부

제정안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일부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예외적으로 주차를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 규제임.

다만, 공유 PM 업계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이 상이하여 국토부·행안부·기재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업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임.

②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규제할 필요 있음.

4)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안 제8조)

제정안
제8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우선,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²³⁾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는 대중교통시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한편,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와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와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국가의 설치 요청은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²⁴⁾

2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안 제9조)

제정안
제9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 제9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안 제10조)

제정안
제10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및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전거의 경우 제정안과 유사하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1)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안 제11조)

제정안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 제11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²⁵⁾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25)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략)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착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안 제12조)

제정안
제12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정안 제12조는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 공공장소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장소의 통행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²⁶⁾도 도로 등에

2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 등의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안 제13조)

제정안
제13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 제13조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구조와 성능이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만이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이동수단 자체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안 제14조)

제정안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정안 제14조는 초·중·고등학교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 교육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라.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등(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고, 등록시 안전요건,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대여사업 운영시 필요한 대여사업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 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
제15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할 것 2.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대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

제정안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①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정안

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19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대여사업자인 법인이 대여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① 대여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

제정안

런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제21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① 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업체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사항들이 규율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폐업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고 수리에 관한 유사입법²⁷⁾에서는 ‘그 기간이 끝난

27)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하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인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날’에 대하여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이후에도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리 간주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개인형 이동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등록하려는 경우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용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동의함.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안 제22조)

제정안
제2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표준대여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대여약관을 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별로 대여약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별로 대여약관이 다를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여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사업 시작 전 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⁸⁾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서비스약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3조)

제정안
제2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부적절한 운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제정안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계는 개선명령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특히 개정안 중 ‘서비스’ 및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해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²⁹⁾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나) 한국PM산업협회 의견

제정안 제23조는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개선명령의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지자체의 재량이 과도하게 인정됨.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사업계획서 변경명령을 통해 사업자에게 운영 대수 및 속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음.

4)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4조)

제정안
제24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임차인이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할 것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할 것

제정안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³⁰⁾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무면허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여사업과 동일하게 운전자격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대여사업자에게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³¹⁾³²⁾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31) 참고로, 제21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대여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자의 의무보험 가입 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신중한 점

이와 같이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을 운영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대여사업자에게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주차금지구역 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주차가 허용된 장소 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 도록 하였으며, 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32)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현재 운영중인 개인형이동수단 일부 업체는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 하고 있음.

- 지쿠 : KB손보, 대인 1.5억원, 대물 1천만원
- 빔 : 한화손보, 대인 4천만원, 대물 1천만원

5)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안 제25조)

제정안
제25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은 제24조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게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는 이러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함으로서 대여사업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6) 명의대여의 금지(안 제26조)

제정안
제26조(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정안 제26조는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대여를 알선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하여 안 제24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³³⁾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7)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안 제27조)

제정안
제27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충전소 등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 활용의 인프라가 증가함으로써 이동수단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대여사업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마. 제5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단체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제정안 제28조 부터 제30조까지)

제정안
제28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0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이용자 안전 교육 및 안전 이용 캠페인 등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해당 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4. 해당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협회의 정관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 안전 교육, 이용 캠페인, 경영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협회를 설립요건으로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협회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설립요건을 두려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두고 있음.³⁴⁾

34)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령또는조례로 정한다.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바. 제6장 보칙

1)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및 자료제출 요구 (제정안 제31조·제32조)

제정안
제31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및 충전소 설치 현황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설의 현황 2. 대여사업자의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및 대여사업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4.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및 대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현황,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현황,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등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가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⁵⁾

35)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2) 등록취소 등 및 청문(제정안 제33조·제34조)

제정안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대여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7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7. 제19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8.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2조를 위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경우 12.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사업 경

제정안
영을 한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문)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정안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가 제정안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 등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의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있음.³⁶⁾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8조·제36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터미널사업·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8.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터미널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

4) 과징금(제정안 제35조)

제정안
제35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정안은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 철도사업 등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일정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정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방식의 과징금임.

동 과징금 부과를 통해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정안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대여사업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³⁷⁾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제7장 벌칙

1)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제정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7조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 등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8조는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3. 제1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3.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
④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 제36조·제37조·제38조의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³⁸⁾, 제92조 및 제94조³⁹⁾, 「자전거 이용 활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 (생략)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료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⁴⁰⁾ 및 제25조⁴¹⁾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보임.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9. (생략)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14조(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삭제

8. 제16조(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생략)

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 16.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의2. (생략)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아. 제8장 부칙

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및 제3조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및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주지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도 및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기존 사업자에게 등록 없이도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7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 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33. (생 략)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③ (생 략)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 제15조의2(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생 략)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 5. 13. 시행예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21. 5. 13. 시행예정).

②·③ (생 략)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③ (생 략)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 략)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 5. 13. 시행예정).

②~④ (생 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10. (생 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2. (생 략)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2021. 5. 13. 시행예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

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생략)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③ (생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4. (생략)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8.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10. (생략)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7. (생략)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9. (생략)

②·③ (생략)